

전략연구 2015-32

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정창수·김상철·이승주

발 간 사

행정기관의 재정정보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운 비밀 문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은 예산 집행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투명한 편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 참여는 재정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가 도청과 시군의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재정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여전히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공개되는 재정정보 또한 제약적입니다. 이번 전략연구를 통해 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점과 추가적인 재정정보 공개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IMF, IBP와 같은 국제 기구의 재정정보 공개 기준을 분석하고,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수준이 국제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성과가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개편에 반영되어 더욱 편리하고 더욱 많은 재정 정보를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책임자로 수고하여 주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 충청남도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배경 및 목적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상세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필요할 필요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재정정보 공개 매체 간 중복·분산, 총량 위주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등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편의성이 제한되어 있고, 공개 시기도 불규칙적이어서 실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양적·질적 재정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혁신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재정정보공개 수준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혁신 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재정정보의 생산자 및 소비자, 그리고 여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투명성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

1)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사항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충남도가 밝힌 재정공개 목적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방재정 분야별 정보의 핵심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가 ▲재정 투명성 지표(OECD기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지표를 놓고 평가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현재 충남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재정정보는 실시간 공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정보의 수준에 있어서 이를 생산하는 재정부서의 공개내용이 반드시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수용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대상에 따른 정보의 필요 수준에 대한 분리 판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별 사업별로 공개되고 있는 세출현황과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 역시 수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접근성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세출현황의 경우에는 아직 정책사업 수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의 항목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내역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예산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튜토리얼 기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의 보완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편 전략 및 추진 방향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개선은 크게 (1) 시스템의 측면 (2) 수용성의 측면 (3) 효과성의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공개되는 재정정부의 폭에 대한 부분으로 재정지출의 주요한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공개되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현재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지출에 대한 실시간 공개체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원가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과 같이 공개 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달성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정보의 공개 내용이 공무원 당사자, 도내 시민사회, 도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제대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의 측면으로 재정정보 공개의 취지가 단순히 정보의 공개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3) 세부 개선 사항

다음은 개선 전략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근거해 도출한 세부 개선 사항이다.

연번	항목	개편내용	해당 메뉴	비고
1	첫화면	첫 화면에 변화되는 정보를 노출 - 현재 예산 집행 현황 그래프	메인	
2	용어해설	재정 용어에 대한 해설 제공 - 용어에 마우스커서가 가면 해당 설명이 팝업	전메뉴	
3	영어병기	외국 이용자를 위해 예산 용어 영어명 병기 - 한글 용어와 영어 용어 병기	전메뉴	
4	사업추진 경과 공개	지출 흐름에 따른 사업추진경과를 세부사업 설명에서 공개 - 용역대가 지급 내역 및 계획 공개	세부사업 설명	
5	입찰공고 정보와연계	재정정보공개와 입찰공고정보를 연계 - 재정정보 사업설명서와 입찰공고를 연계해 입찰 기본정보와 과업지시서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입찰이 끝난 경우에는 계약 결과와 연계	세부사업 설명	장기 과제
6	지출과정 연동	지출원인행위 이후의 과정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과 연동	세부사업 설명	장기 과제
7	예산서,결산서 HTML, XLS 다운로드	세입세출예산서, 결산보고서, 재정보고서 등 을 온라인 페이지에 친화적인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열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함	세입세출 예산서	
8	세부사업 설명서전문 공개	사업별 세부 설명서 및 예산산출 명세서 전문을 PDF로 공개	세부사업 설명	
9	기존 감사 결과 게재	감사지적사항 메뉴 신설 감사원, 자체감사, 의회감사 등 재정관련 감사 지적 사항의 이행결과 게재	메뉴 신설	
10	신규 및 종료 사업 목록	신규사업, 종료사업, 대규모 사업(100억 이상) 목록 및 연도별 집행 현황 정보 제공	메뉴신설	
11	지출액/예산 현액 비율 표시	분류 메뉴에 ‘액수’ 와 ‘집행률’ 을 포함 하여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지출액과 집행율을 함께 표기	전메뉴	

12	각종 심사 위원회정보 공개	투융자심사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지원금심사위원회,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공개	메뉴 신설	
13	사업 단계별 정보 제공	입안 :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 심사 : 투융자심사자료 의결 : 예산안 및 예산서 평가 : 결산서, 사업성과보고서	세부사업 설명서	장기 과제
14	관련 정보/ 서비스와의 연계	예산낭비신고 메뉴, 중장기재정계획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		

4)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

충남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

충청남도 제도 개선(재무회계규정, 관련 조례개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메뉴 신설, 시민예산 낭비신고 메뉴 신설, 감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확성',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IBP 예산공개지수

기 실시중인 도민여론조사 결과 공개, 보조사업 여부 명시, 사업계획서 공개, ·과년도 예산 정보 공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개, 성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예산문서의 접근성, 정부예산 안 공개, 예산과정 공개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OECD 예산투명성

튜토리얼(예산용어 설명) 기능, 사업계획서 및 수반 용역보고서 공개, 기존 성과지표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 비재무성과 데이터 공표, 조세지출 토론 포함 등의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다.

5) 활용방안

(1)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를 매개로 하는 '재정정보 경진대회' 실시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마을 살림살이 알기' 경진대회 실시
- 우수 학교 및 학생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

(2) 시민지출관 혹은 재정관 제도 시범 도입

- 음부즈만 제도를 확대해 시민 지출관과 재정관 제도를 도입해 재정 집행 과정에 시민 감시 체제 도입
- 시민지출관, 재정관 보고서를 발표해 재정 과정에 대한 시민 감사 체제 안착

(3) 현 제로-100 디자인단의 미션 재설정

- 도내 외 학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전문가, 전공 석 박사과정생 활용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공개방안 논의

(4) 재정정보공개를 통한 업무 효율 증진 사례 수집 및 공유

- 부서간, 광역 - 기초간, 광역 - 중앙정부간 융합 행정 사례 수집 및 확산
- 기초단체 정보공개 및 예산분석 사례 창출 및 수집

3. 정책제언

정보공개는 행정의 복잡화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속한다. 일차적으로 재정규율이라는 차원에서 공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기관의 긴장감을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행정의 대상으로만 접근되었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제공자 → 수혜자의 구도를 벗어나 민관 협치의 계기를 마련하다는 '새로운 정부'의 모델을 위한 정책도구의 의미도 강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는 공개하는 측과 공개받는 측의 관점에 따라 공개의 범위와 질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듯이 공급하는 입장에서 상당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거나 혹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병행되지 않아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반의 정보공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 역시 단기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사례에서 간과하고 있는 수용자의 동기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용자 측에서의 관점'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3
1) 문헌 및 사례연구	3
2) 국제 기준 연구	3
3) 심층 인터뷰	3
4. 선행 연구 고찰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 분석	5
1. 이론적 고찰	5
1) 재정투명성의 의미	5
2) 재정정보공개 정책의 흐름	5
2. 정책 동향 : IMF 재정투명성 기준과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수준	8
3. 국내외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0
1) 국내사례 분석	10
2) 해외 지방정부 재정정보 공개 사례	21
제3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7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추진 경과	27
2.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9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29
2)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32
제4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편 전략 및 방안	34
1. 개편 전략 및 추진 방향	34
1) 수준별 시스템 개선 방안	35

2) 이용자 관점별 개선 방향	38
2. 세부 개선 사항	40
3. 개선 효과 - 국제기준 부합정도	44
1) 국제적 재정투명성 기준의 내용	44
2)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	51
4. 활용방안	56
제5장 결론 : 정책제언	58
[부록]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재정 용어 정리	61
1. 용어 정리의 방법	61
2. 재정정보공개용 재정용어 정리	62
1) 1차 재정용어 목록	62
2) 2차 재정용어 목록 : 재정공시보고서	66
3) 3차 재정용어 목록: '지방자치단체 재정개요 편람' 용어집	68

표 목 차

<표 1> IMF 재정투명성 규약 중 한국이 미약해 보이는 항목	8
<표 2> 개정 법률의 신규 구문 비교	11
<표 3> 계획재정부 열린재정 메뉴	13
<표 4> 서울시 클린재정 구축 과정	18
<표 5> 재정정보공개 평가지표	29
<표 6> 재정정보 공개 종합평가 결과	31
<표 7> 수준별 시스템 개선방안	35
<표 8> 관점별 요구사항	39
<표 9> 세부 개선 사항	42
<표 10> MF 재정투명성 규약의 영역 및 세부지표	46
<표 11> 장기재정전망 관련 규약 내용	48
<표 12> 재정정보공개 현황	49
<표 13> IBP 3개 분야 총 122개 질문	51

그림 목 차

<그림 1> 열린재정 홈페이지	14
<그림 2> 열린재정 상세재정 통계	14
<그림 3>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구성	17
<그림 4>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화면	18
<그림 5> 서울시 재정정보공개사이트 - 일자별 예산집행현황 화면	19
<그림 6> 서울 위키 화면	20
<그림 7> 수용자 측에서의 관점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비전	5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지방재정의 위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지방재정제도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혁신형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넘어서서 기존의 재정정보 공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재정정보 공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정책적으로 최근의 재정여건 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정운용 방식을 과감히 혁신할 필요가 요구되었다(기획재정부, 2015). 저성장구조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악화될 전망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개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상세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필요할 필요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재정정보 공개 매체 간 중복·분산, 총량 위주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등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편의성이 제한되어 있고, 공개 시기도 불규칙적이어서 실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양적·질적 재정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정보 공개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과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한다는 취지도 있다. 실제로 2011년 EU의 열린 데이터전략(Open Data Strategy, 2009년 미국의 열린 정부 의제(Open Government Initiative, 같은 해 호주의 열린 정

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흐름이 강화되어 왔는데, 이 중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8월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업무 누수를 제로화 및 행정정보 공개 100% 실현, 약칭 <제로-100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2013년 1월부터 재정공개시스템의 우선 공개 이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시스템', 도 금고의 'e-세출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로-100 프로젝트>는 2015년 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제로 100 도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기존의 충남넷, 3농혁신,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기업SOS, 통합복지 등 42개 도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혁신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재정정보공개 수준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혁신 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재정정보의 생산자 및 소비자, 그리고 여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투명성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내용

기존에 구축된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정보공개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점검한다. 이어서 국내외 재정정보공개의 사례를 살펴본 후,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이해관계자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통해서 짚어본다. 동시에 기존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을 다룬다.

3. 연구 방법

1) 문헌 및 사례연구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의 이론적 배경과 동향에 대한 기존 연구 논문과 보도 자료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국내외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2) 국제 기준 연구

IMF, IBP, IBRD 등 국제 재정투명성과 관련한 규약과 기준을 검토하고 부합 여부를 분석한다.

3) 심층 인터뷰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계자와 개발 배경,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도출한다.

4. 선행 연구 고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서재만, 2010)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정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현황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공유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과 공개재정법 상 재정 정보 공표 조항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재정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제 기준을 고찰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중앙 재정 정보 공개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지출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 효과 및 확대방안”(정창수, 2014) 보고서에서 국내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피면서 특히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의의와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충남의 실시간 재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17개

광역시자치체의 재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제도 현황과 확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현재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시스템이 재정 투명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해 세부적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 분석

1. 이론적 고찰

재정정보의 공개는 2000년 이후부터 국제적인 재정정책의 흐름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는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럽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등장한다. 실제로 재정투명성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재정정책의 과제로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관련된 정보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환경을 통한 정보공개의 용이성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1) 재정투명성의 의미

재정투명성은 행정부가 생성하고 보유하는 재정정보를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성과 평가 단계 등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투명서는 국민 참여와 재정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2) 재정정보공개 정책의 흐름

재정정보공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는 재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목적을 함의한다. 특히 행정에 있어 '재정을 운용하는 자가 재정운용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고 평가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보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2010.

재정투명성이란 행정부가 만들고 운용하는 재정정보를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 이후 평가 단계 등에서 효과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정운용 과정의 참여 조건을 만들어 재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가 상호 균형적인 재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 및 그 결과인 확정 예산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재정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해미드Hameed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투명성이 높을수록 다른 재정지표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투명성과 경제성과의 관계를 IMF의 ‘기준과 규약 준수 보고서the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의 평가를 활용하여 계량 분석하였는데 재정투명성의 지표를 4개의 하위지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더 투명한 국가일수록 신용등급credit ratings,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부패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즉 재정투명성이 높을수록 국제적인 신용등급과 재정낭비를 막는 재정규율, 그리고 부패 방지에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설정과 논의의 중심 지표로 언급되는 IMF의 규약은 1998년에 채택되었다. 이후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1년에 개정한 후 2007년에 재개정하였다. 2007년의 재정투명성 규약은 기본적인 4대 구조 하에 10개의 원칙, 45개의 세부 코드를 규정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기본 구조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공개된 예산 과정’,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으로 구분된다²⁾.

2) 아래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보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2010.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는 정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부문이 기타 공공부문 · 민간경제와 구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내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공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재정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공개된 법적 · 규제적 · 행정적 틀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독립적인 재정투명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공개된 예산 과정'에서는 예산 준비가 기수립된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잘 정의된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목적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예산 집행execution · 감시 monitoring · 보고reporting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예산규율의 강화가 목적이다.

셋째,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에 있어 3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먼저 국민은 정부의 과거 · 현재 ·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위기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다음으로 재정정보는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의 시기적절한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즉 실효적인 정보의 공개에 대한 원칙으로, 참여 보장을 통한 재정투명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과 연관된다. 특히 정보공개에 수용자 입장을 강조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재정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데이터 질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재정 활동이 효과적인 내부 감시와 세이프가드에 의해야 함을 제시한다. 재정정보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장기적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재정 운용의 주체가 재정투명성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럴 경우 감시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되지만 관점의 다층화를 통해서 좀 더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을 통해서 재정정보의 실질적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IMF의 규약에 있어서, 각각의 원칙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이중 재정투명성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은 '공개된 예산 과정'과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IMF의 동 원칙에 대한 매뉴얼에서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활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정투명성의 핵심적인 특징이며, 재정활동과 정부 목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정책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방식의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재정정보의 시기적절하고 균일한 이용을 확실하게 하는 초석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정책 동향 : IMF 재정투명성 기준과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수준

IMF의 재정투명성 기준에 따른 평가는 회원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해당 규약의 재정투명성 부문 평가가 가장 최근의 평가이며, 2007년도에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이 변경된 이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조차 재정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시사한다.

국회예산처는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규약의 항목으로 2가지 기본구조에 3가지 원칙, 5가지 기본 규약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IMF 재정투명성 규약 중 한국이 미약해 보이는 항목

구분	내용
2.	공개된 예산 과정
2.2	예산 집행, 감시, 보고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2.2.2	예산현황(Budget Development)에 관한 반기보고서(midyear report)가 시의적절하게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최소한 부기 수준의 업데이트가 발간되어야 한다.
3.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3.1	국민은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위기에 관한 종합적(comprehensive)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1.2	최소 2년전의 회계기간의 산출물(outturns)과 최소 향후 2년간의 주요예산총액에 대한 전망과 민감성 분석이 연간 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1.7	정부는 장기 재정에 관한 주기적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3.3	재정정보(fiscal information)의 시의적절한(timely)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commitment)이 있어야 한다.
3.3.1	재정정보의 시의적절한 발간(timely publication)은 정부의 법적 의무이어야 한다.
3.3.2	재정정보에 관한 사전 공표 일정이 발표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자료 : IMF, Fiscal Transparency Code, 2007 정리, 서재만, 재정정보공개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0.12.

먼저 IMF 규약에 따르면, ‘공개된 예산 과정’의 항목 내에서 예산 현황에 관한 반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법」상 행정부의 예산 현황에 대한 반기 보고서 규정이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당해 연도 중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사항은 통합재정에 관한 월간 보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매뉴얼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에는 예산 집행budget implementation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comprehensive analysis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종합적인 분석에는 주요 세입, 세출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함께 연도말 추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결정과 환경적 요인들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거시경제안정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당해 연도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재정에 특화된 반기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의 항목 내에서 과거와 미래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 재정 성과에 대한 내용이 연도별 예산서the annual budget presentation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동시에 제출하여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 상황 추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법정 예산안 서류에도 과거의 실적 자료 정보와 예산안 정보가 비교 가능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칠레의 경우를 보면, 예산연도 이전 4년간의 예산총계에 관한 정보와 향후 3년간의 예산에 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 등 최대한 많은 총계 정보 이하의 세부정보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서는 장기 재정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화와 한정된 자연자원, 기후변화에 의한 잠재 효과 등과 관련한 재정변수(fiscal variables)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현재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미 정부 예산서의 ‘분석적 전망Analytical Perspectives’를 살펴보면, 최대 75년 단위의 사회 보장 지출social security 등에 대한 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재정에 관한 장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 ‘EU의 장기 재정 안정성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the European Union’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세대 간 회계 등을 활용한 재정 상황에 대한 장기추계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외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사례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정보 공개의 흐름은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도입한 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서울시에서 도입한 클린재정과 서울위키를 다룬다.

그에 앞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법개정으로써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법령을 통해서 재정고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1년에 한 번씩 공개되는 재정보고서를 통해서 재정정보 접근성과 효과성에 한계가 있었

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5월에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 방식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현재 충청남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표 2> 개정 법률의 신규 구문 비교

기 준	신 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u>공시</u>)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u>공시 등</u>)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 -----공시 및 공개----- -----

이와 같은 재정정보공개의 흐름이 비록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시책을 통해서 재정정보공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열린 재정'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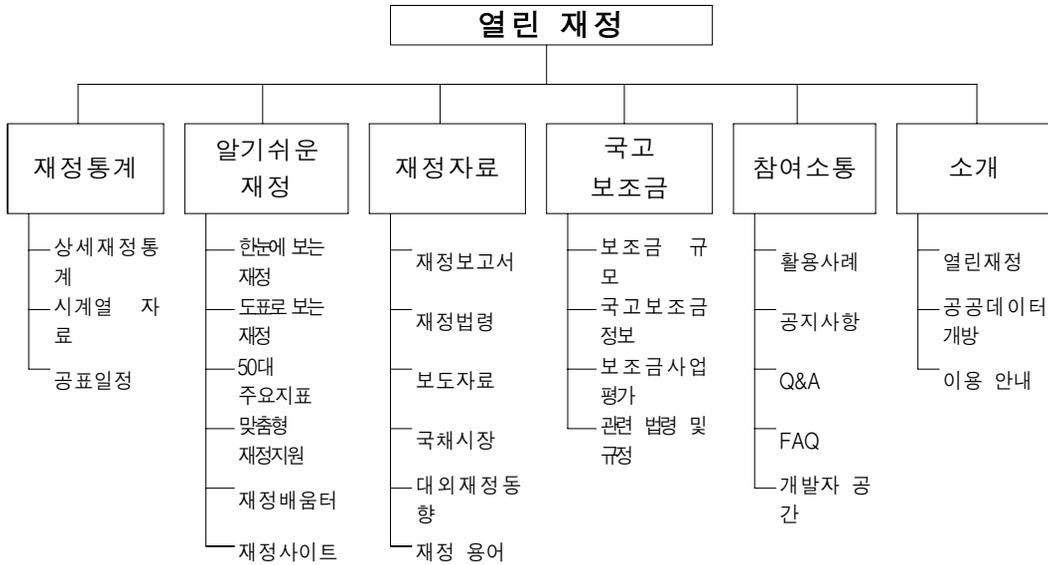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재정정보 제공으로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였는데,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 794개 재정지원 정보를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활용 가능했다. 이를테면 현재의 시스템에서 고용(관심분야) 및 청년(생애주기)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대상 고용 관련 재정지원 사업 17건이 검색되며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식이다.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보면, 재정전문가·정책담당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세 통계 및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예산·집행·결산 및 성과관리 등 재정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세 데이터 및 보고서, 시계열(1951년~2015년) 통계를 활용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열린 재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본자료를 공개open API 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 및 보조금 편성·집행 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표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메뉴



좀더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보면, 한눈에 보는 재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8개 핵심 재정통계를 그림 및 도표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전체 모습을 쉽게 일괄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로 보는 재정 메뉴를 통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visual 자료를 제공한다. 또 가장 많이 찾는 정보를 중심으로 50대 주요 재정지표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한편, 관심분야(13개), 직종(8개), 생애주기(8개) 및 성별에 따라 관심 있는 재정지원제도를 찾아볼 수 있게 맞춤형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배움터 메뉴를 통해서 학생, 일반국민들이 재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10개 분야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은 열린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 구성이다. 전체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열린재정 홈페이지



<그림 2> 열린재정 상세재정 통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중앙부서의 예산 집행현황을 부서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 모든 메뉴가 갖춰져 있다 보기 힘들지만, 각 부서별 세부 집행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기존의 재정정보공개에서는 찾기 힘든 변화다.

(2)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및 '서울 위키'

다음으로 서울시의 사례를 클린재정시스템 구축과 서울위키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클린재정시스템은 지난 2006년부터 정책집행과정 중 재정분야의 자동화, 시스템화를 위하여 구축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에 공표되었던 행정정보의 내용에서 재정정보의 폭을 넓혔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2.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인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4.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집행기관 중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6.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7.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8.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9.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3.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8.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0.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13.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제7조의 내용

① 서울시 클린재정 사이트

서울시는 클린재정의 목적으로 '재정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서울시 재정에 관한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결과정보 공개로 재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결과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과정)중심의 감사에 필요한 재정정보 제공하고 업무 및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 및 쌍방향 대 시민 서비스 체계 마련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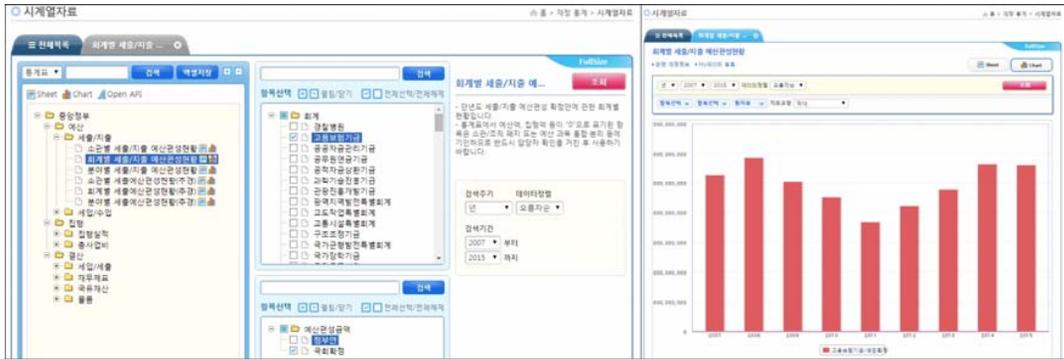
이에 따라 구축된 클린재정시스템은 서울시 본청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련 계획, 심사, 예산, 재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해당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함께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재정관련 정보의 수집 및 해당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림 3>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구성



실제로 클린재정에서 공개되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연도별 비교에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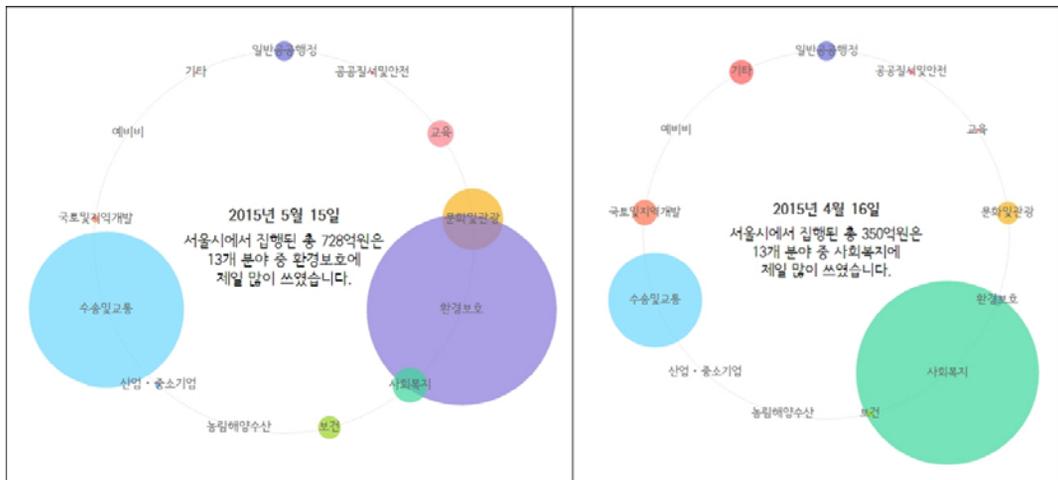
서울시의 클린재정 시스템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의 구축을 1~2년 단위의 단기적 프로젝트로 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접근성과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데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4〉 서울시 클린재정 구축 과정

단 계	내용
1단계 (2007. 5. 21 ~ 2007. 12. 18)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재정업무 투명도 개선을 위한 자율점검 항목 발굴 및 시스템 개발 시민고객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개발 서울시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발전방향 제시
2단계 (2008. 8. 27 ~ 2009. 2. 26)	사업통합 관리체제 방안 마련 관리자 재정관련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산하기관 재정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 계약처리 프로세서의 개선 및 공개 서비스의 고도화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 사업 보완 및 고도화
3단계 (2009. 7. 24 ~ 2010. 1. 23)	자치구 재정 정보의 수집 및 통계 제공 시스템 구축 복지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 운영중인 클린재정시스템의 보완 및 고도화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사업관리 관리방안 마련

서울시 재정정보 공개사이트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시각화자료를 통해서 자칫 이용자 시민에게 낯설 수 있는 재정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인터랙티브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부분은 눈에 띈다. 일례로 일자별로 예산집행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해당 일자를 스크롤 함에 따라서 각 분야의 집행규모를 보여주는 원의 크기가 변함으로서, 해당 일에는 어느 분야의 재정집행이 상대적으로 높았는지를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림 5> 서울시 재정정보공개사이트 -일자별 예산집행현황 화면



또한 1년이라는 회계연도 단위의 집행률도 매일 공개하고 있는데, 전체 24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집행 비율과 각 분야별 검색일 기준의 집행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하면 각 분야별로 현재 시점에서 어느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이 높은지와 같은 사항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 그런가'라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각 분야별 예산집행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서울 위키 사이트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참여예산제 도입과 함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위키'라는 새로운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클린 재정이 회계상의 자금 이동 등에 초점을 둔 재무적 정보에 치중되어 있다면 서울위키는 재무적 내용을 채우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적 판단 및 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서울위키 메뉴는 참여예산사이트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메뉴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 분야별로 총 8개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2015년 확정 예산서에 명시된 개별 사업단위 별로 사업계획서가 제공된다.

〈그림 6〉 서울 위키 화면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

서울위키

사업명을 입력해주세요.

Q 검색

서울 살림살이가 궁금하세요?
서울위키를 들여다 보세요.

시정분야별 사업찾기

사회복지

문화관광

도시 안전관리

도로 교통

산업경제

공원 환경

도시 계획 주택 정비

일반행정

예산서 보기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인기글

-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두배 통장(2015) 2015-03-27
- 행정정보통신망(2015) 2013-02-08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2015) 2013-02-08

최신글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

서울시 참여예산

서울시는 2015.5.6까지 2016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8개 분야 72개 사업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시식을 <http://www.seoul.go.kr>에서 확인

2) 해외 지방정부 재정정보 공개 사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정보 공개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2014년과 2015년 충청남도와 산하 기초단체 회계담당공무원들이 미국과 유럽의 지방정부를 방문해 재정정보 공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수를 실시했다. 다음 내용은 연수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충청남도(2014), 충청남도(2015))

① 유럽

○ 영국 카디프시(CARDIFF COUNCIL)

카디프시는 웨일즈 22개 도시중 가장 큰 도시이나 재정자립도는 20%로 열악한 편이고 연간 2014/2015년 연간 예산규모는 585백만 파운드이며, 분야별로는 교육부문에 229.6백만 파운드, Health& Social Care부문에 95백만파운드, 스포츠·레저·문화 부문에 14.5백만파운드, 고속도로 및 교통인프라 부문에 29.4백만파운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예산편성단계(The Annual Cycle)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4월~3월로 운영되며 매년 4월~7월(1단계)에는 편성, 7월~10월(2단계) 조정, 10월~12월(3단계) 11주기간의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석·평가, 1월~3월(4단계) 시행정책 검토 등의 방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상태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 후 만들어지는 5년 단위 중기 예산 편성시, 공약검토 및 각 사업편성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예산 편성 자체가 공개되는 구조로 예산 편성시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중기 예산에 맞추어 매년 편성되는 예산서와 결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나, 한국과 같이 실시간으로(채주를 포함한 내역)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었다.

공개내역에는 세부 채주내역보다는 분야별로 공개하고 있었고 부문별로 기준을 정하여 신호등(빨·노·파) 형태의 공개내역을 통하여 빨간색은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노란색은 적정

선으로 지출된 경우, 파란색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 등으로 예산액과 지출액 차액을 표시하고 있다.

당해 예산을 모든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세부적인 지출내역보다는 예산대비 지출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공개하고 있는 추세로 공개하고 있었다. 예산을 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절감시킨 예산을 다시 재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 지출내역은 우리의 결산서와 같이 만들어서 이해관계인이나 관심있는 시민이 시청 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개괄적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벨기에 베어셀시(BEERSEL)

베어셀시의 예산수입은 지방정부 보조금 89.5%, 사용료 수입 6.5%, 기타 자치구세 수입 4.3%로 구성되고, 시 연간 예산규모는 30백만유로, 인건비에 47%, 시설유지관리에 22.4%, 건설교통분야에 25%, 채무상환에 5.4%를 편성하고 있다. 선거 당시 공약했던 내용을 토대로 6년 단위 중기예산편성을 하고 이에 따라 1년 단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매년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이 6년에 따라 집행되다보니 연간 예산 편성 자체에 변동 가능성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단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유럽의회에서 정해준 기준하기는 어렵다.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상시적인 홈페이지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산 편성당시 시민, 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6년간의 집행 과정에서 받아들인 시민의 견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조로 예산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괄적인 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은 열람이 가능하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결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전방적인 재정 통제는,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고, 현정권 집행 6년 동안은 변경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독일 슈발바흐시(STADT SCHWALBACH AM TAUNUS)

슈발바흐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인구 15,000명의 소도시이다. 예산규모는 42백만유로로 슈발바흐시 소요예산 이상의 재정수입이 발생하며, 남은 예산은 주정부 및 중앙정부를 거쳐 독일 내 다른 도시 및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 자체 조세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법인세가 주요 수입원(50%)이며, 나머지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와 각종 사용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적이다.

예산편성 재원은 충분하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따른 집권기간에 맞춘 중기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수시 변동이 어렵다.

중기예산서는 선거가 끝나고 편성이 완료되는 시점, 연간 예산서는 매년 의회에서 통과되는 12월, 결산서는 매년6월경(결산 완료시점)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부문별 총액만 표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세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기업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공개하고 있다.

② 미국

○ 뉴저지 베리젠 카운티(Bergen county)

베리젠 카운티는 인구 90만 도시로 연간 예산은 52억달러이다. 베리젠 카운티는 연간 재정 상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매년 6월 작성되어 각 지역 연방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공공 서비스국)과 State(뉴저지주)에 보고하고 있다.

재정 보고 내역은 일년간 시에서 지출되는 모든 내역과 각 구(town) 별로 모아지는 세금과 차량국에서 모아진 벌금, 그 외 여러 기관들로부터 기부 받은 기금, 주에서 또는 시에서 운영되어진 채권 수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출 내역 중에는 극빈자 자녀들을 위한 대학 자금(college fund and grant), 급식비(freelunch), 의료비(medicaid), 식료품 구입 지원(food stamp), 주 공무원과 선출직 시의원에 대한 월급과 각 구에 지원되는 공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베르겐 카운티는 재정내역은 지역신문과 인터넷으로 공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이고 각 시는 재정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예산편성은 매년 공청회를 통해 수집되거나 각 구의 구청장 및 구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시에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시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예산편성시 공청회는 일년에 한번 구청에서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구청에서 구청장 주도하에 실시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매주 수요일 시청에서 열리는 시의회 위원회의에서 다루어진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다음해 열리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고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0.2% ~ 0.8%의 비율로 다음 회기에 반영한다.

o 페어팩스 카운티 (Fairfax county)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구 11만의 도시로 연간 예산은 69억달러이다. - 페어팩스 카운티는 1년에 한번 종합연차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크게 Introductory, Financial, Statistic 세 개의 Section으로 구성, 3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양을 공개하고 있다. 지출내역은 크게 2가지(채주별, 부서별)로 나뉘어서 월별로 공개한다.

【 Vendor Payment (채주별) 】

회계연도와 해당 월을 선택하여 채주명을 입력하면 회계개시부터 해당 월까지 그 채주에게 지출된 전체 금액 및 세부내역(부서명, 회계명, 지급월, 지급금액) 까지 공개하고 있다.

【 Budget vs Actual Expenditures (부서별) 】

회계연도와 해당 월 및 부서명을 선택하면 그 부서의 예산편성 목, 총 예산, 해당 월까지 총 지출액을 공개하고 있다.

페어팩스시에서는 Government “without doors and clocks” 라는 시정 목표로 모든 정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청구시 즉시 공개를 하고 있으나 봉급·복지·의료·보건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o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시(City of Oakland)

오클랜드시는 인구 39만명의 도시로 연간 예산은 11억달러이다.

오클랜드 시는 분기별로 Cash Management Reports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Financial Reports는 년도별로 세부적인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Financial Reports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연간종합보고서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 오클랜드시 특별 재정 보고서Oakland Redevelopment Agency Financial Reports
- 오클랜드시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 보고서 Oakland Redevelopment Successor Agency Financial Reports
- 회계감사보고서 Single Audit Report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시 제공해야 하며, 리포트 작성 및 정보공개 제공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결산은 외부기관에서 결산한 내용과 내부에서 결산한 내용을 비교하여 공표하고 있다.

3) 시사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구축에 따른 물리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② 재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공급자의 측면이 아니라 수용자의 측면, 즉 시민들의 정보활용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이용자 반응 확인'이 간과되는 측면이 크다.

③ 여전히 이용자 시민에겐 낯선 재정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재정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정보공개에 한계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해외 지방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유럽과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시민참여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에 기초한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까지는 아직 시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인프라가 튼튼하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가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 태도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의 요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추진 경과

충청남도는 2013년 6월 도청의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재정정보공개는 충청남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현황, 결산, 계약관리시스템, 학술용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입은 2차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별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했다.

<그림 7 > 충남 정보공개 시스템 화면(2013년)



▲ 충남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인화면

2014년에 충청남도 산하 시군의 재정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충남의 세출 예산 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은 도와 시·군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과 현재까지 지출총액, 세부적인 지출목적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충청남도와 산하 시·군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남도가 시행 중인 지출내역 공개 시스템이 지출일자별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충청남도는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충청남도 산하 각 시·군은 부서별, 세부사업별, 통계목별의 검색 기능을 제공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정보와 세부사업별 계획대비 집행액 등 재정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2014년은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모색되었던 시기이다. 2014년 5월에 충청남도 경리팀장 등이 참석해 시스템 개발자와 '세출 예산 지출 내역 영수인 공개 관련 협의'를 통해 법인, 단체에 대한 채주를 공개할 수 있도록 e-호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7월에는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회계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출예산 지출내역 공개에 따른 업무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지방 재정제도 이해 및 회계 운영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연구원은 8월 '충남도 재정정보 공개 의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해 충청남도 재정정보 공개의 파급 효과와 전국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9월 국회에서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전국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 토론회는 충청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확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종학 의원은 "충남도의 세출예산 지출 내역 실시간 공개 시스템은 세금을 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에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전국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은 2015년 5월 12일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전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단위로 공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재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는 2015년 12월부터 충청남도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2.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충청남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인 ‘충남넷’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시간재정공개 시스템은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정보 시스템 평가에 있어 충남이 67.2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가장 우수한 재정정보 공개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창수(2014)).

이 평가의 지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지표

〈표 5〉 재정정보공개 평가지표

구분	목표	내용	배점	항목
시민	감시	정책실명제는 공개되고 있는가?	5	a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자체 감사 내용이 함께 공개되고 있는가?	5	b
		결산서가 공개되고 있는가?	5	c
		예결산 심사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가?	3.5	d
		의회 제출 보고서, 업무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가?	5	e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가?	5	f
	참여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5	g
		재정 관련 용어 설명을 하고 있는가?	4	h
		자료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4	i
		사업에 대해 시민제안을 할 수 있는가?	4	j
		시민 재정 교육 광고를 하고 있는가?	3.5	k
정책 입안결 정자	판단	자산 현황과 평가는 구체적인가?	5	l
		중기 채무변제 계획은 있는가?	4	m
		지난 3년 간 해당항목 예산 비교를 제공하고 있는가?	3.5	n
		향후 3년 간 일몰사업 목록 및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가?	3.5	o
	절감	인건비 및 직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의 구체적 항목과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가?	5	p
		민간이전, 민간보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5	q
		당해년도 신규사업을 따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가?	4	r
		지출현황을 공개하고 있는가?	5	s
		시민들이 예산절감 제안을 할 수 있는가?	4	t
사업자	예측	당해년도 입찰 필요 사업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4	u
		당해년도 및 중기 주요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가?	4	v
	신뢰성	경쟁입찰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공개되고 있는가?	4	w

총 23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네 개 항목에 3.5점을, 9개 항목에 4점을, 10개 항목에 5점을 배점했다. 가중치가 아닌 배점을 둔 이유는 지표 항목들의 중요도를 추정해야 할 만큼 재정공개를 통해 지향되는 잠정적 목표를 한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며, 입론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에서 항목과 단계적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생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배점은 외부인이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재정 상황과 정책, 시민들의 참여정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순서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고, 유용한 정보라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에는 배점을 적게 책정했다.

②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결과는 67.25점으로 충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정정보 공개 종합평가 결과

항목	대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a	5	5	2.5	2.5	5	2.5	5	2.5	2.5	2.5	0	0	2.5	5	0	2.5	0
b	5	5	5	5	5	2.5	5	5	5	5	5	2.5	0	5	5	5	0
c	5	5	2.5	5	2.5	5	0	5	5	2.5	2.5	2.5	5	5	0	2.5	5
d	3.5	1.75	0	0	0	1.75	1.75	0	0	0	0	0	1.75	0	0	0	0
e	5	5	2.5	0	0	0	0	0	0	0	2.5	0	2.5	2.5	0	0	5
f	5	5	5	5	5	0	0	5	2.5	0	5	2.5	5	5	2.5	5	5
g	5	5	2.5	0	2.5	5	5	0	5	2.5	2.5	2.5	5	5	0	2.5	5
h	4	2	0	4	2	0	2	0	0	4	0	0	0	4	0	2	0
i	4	4	2	2	4	4	4	4	0	2	2	2	2	2	4	4	4
j	4	4	2	4	2	4	4	4	0	2	4	2	4	4	2	2	4
k	3.5	1.75	0	1.75	0	0	1.75	0	0	0	0	1.75	1.75	1.75	0	0	1.75
l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	4	2	4	2	4	0	0	0	0	0	0	4	0	4	0	2	0
n	3.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5
o	3.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	5	0	0	0	0	0	0	0	0	0	2.5	0	0	0	0	0	0
q	5	2.5	2.5	0	0	0	0	0	0	0	0	0	0	5	0	0	5
r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	5	2.5	0	0	0	0	0	0	0	0	0	0	2.5	5	0	0	0
t	4	4	2	2	2	2	4	2	0	2	0	2	0	2	0	0	0
u	4	4	2	0	0	0	4	0	0	0	4	0	0	4	2	4	0
v	4	4	4	0	4	0	4	4	0	2	2	4	0	4	2	4	0
w	4	2	4	2	0	0	0	0	2	0	2	2	0	4	0	0	0
계	100	64.5	42.5	35.25	38	26.75	40.5	31.5	22	24.5	34	27.75	32	67.25	17.5	35.5	36.5

2)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충남도가 밝힌 재정공개 목적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방재정 분야별 정보의 핵심내용이 공개되고 있는가 ▲재정 투명성 지표(OECD기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지표를 놓고 평가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다(윤영진(2015)).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다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윤영진(2015))

1)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틀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보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 도지사 지시사항, 보도자료, 사업현황 등을 포함한 입체적 내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틀 개발이 필요하다.

2) 또한 이용자(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목표를 두고 관리하고, 예산편성 시 정보와 내부·외부감사 등 회계감사 부문 정보를 강화해야 하며, '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시스템'과 '재정정보의 공개 및 전달' 부문도 보강되어야 한다.

3) 도민들이 예산을 통해 충남도의 행정목표와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내부·외부감사 등 회계감사 부문 정보 강화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평가 그룹을 두고 상시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2015년 3월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① 공개범위의 확대: 세입 세출예산의 세부내용 공개 ② 이해성 향상: 그래프 및 시각적 효과 사용 ③ 활용성 제고: 자료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④ 도민참여 유도: 주민의견수렴 기능 보강의 네 가지 방향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점운동을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에 재정공개정보시스템 충남넷을 공개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은 제로 100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및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특히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항목 10가지 세부지표와 IBP의 예산공개지수 3가지 항목 14가지 세부지표를 적극적으로 준용하기로 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의 재정정보공개의 의지를 천명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현재 충남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재정정보는 실시간 공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정보의 수준에 있어서 이를 생산하는 재정부서의 공개내용이 반드시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수용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대상에 따른 정보의 필요 수준에 대한 분리 판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별 사업별로 공개되고 있는 세출현황과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 역시 수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접근성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세출현황의 경우에는 아직 정책사업 수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부 사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의 항목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내역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특징은 재정정보공개가 숫자보다 사업의 공개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고도화 계획'을 통해서 고려중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튜토리얼 기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용자 중에서 비예산 부서의 행정과 도민 등 시민사회는 재정정보의 수용방식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재정정보의 필요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재정정보의 보완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편 전략 및 방안

1. 개편 전략 및 추진 방향

연구를 통해서 우선 충남에서 준비 중인 '고도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정보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제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공시 제도 등 기존의 중앙정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정보 공개 체계를 활용하여, 단순히 도 차원의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정부의 재정정보까지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수용자 입장에서는 개별 재정정보의 확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광역정부간 재정요소간 비교도 중요한 활용지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정정보공개가 애초 목적했던 바와 같이 투명한 사업정보의 공개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사이트 구축과정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기왕에 구축되어 있는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폭넓은 행정정보 공개의 방안을 제시한다.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개선은 크게 (1) 시스템의 측면 (2) 수용성의 측면 (3) 효과성의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공개되는 재정정부의 폭에 대한 부분으로 재정지출의 주요한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공개되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현재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지출에 대한 실시간 공개체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원가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과 같이 공개 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달성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정보의 공개 내용이 공무원 당사자, 도내 시민사회, 도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의 측면으로 재정정보 공개의 취지가 단순히 정보의 공개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한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 중 현 단계에서 가능한 수준의 기술적 범위, 제도 개선의 영역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당면 과제, 향후 과제로 구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

1) 수준별 시스템 개선 방안

〈표 7〉 수준별 시스템 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비고
	시스템 수준	정책 수준	국제 기준 수준	
접근성	프론트페이지의개선: 개괄정보의 제공 (편성 내용, 분야별 집행액수 및 집행률, 당일 집행목록 노출)			
	주요 재정용어에 대한 튜토리얼 기능 도입: 커서를 위치할 때 개괄적인 용어설명 제공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의 도입: 편성액 대비 집행률(분야별, 사업별) 정보			
	재정정보 공개자료 메뉴 구성: 재정공시, 예산서, 결산서,		정부부문은 여타 공공부문 및 민간경제와 구별되어야 하	

	<p>감사보고서, 조세지출보고서 등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접근가능하도록 함.</p>		<p>며, 공공부문 내에서의 정책과 관리 역할은 명확하여야 하고,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IMF 1.1)</p> <p>국민은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 위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IMF 3.1)</p> <p>조세지출에 대한 토론이 예산 설명에 포함된다.(OECD)</p>	
	<p>재정정보의 재가공이 용이한 포맷으로 제공: 엑셀, 한글화일 등</p>			
효과성		<p>조례의 개정</p>	<p>재정운동을 위한 명확하고 공개된 법적, 규제적, 행정적 틀이 있어야 한다.(IMF 1.2)</p> <p>재정정보는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MF 3.2)</p> <p>재정정보의 시기 적절한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IMF 3.3)</p>	
		<p>사전예산보고서(1개월 전), 연말보고서(6개월</p>	<p>· 사전예산보고서가 적어도 회계연도 개</p>	<p>법령 개정사항</p>

		이내), 사전선거보고서 공지에 대한 사항 중,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집행함.	<p>시 1개월 전에 공표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보고서는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 사전선거보고서는 선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거 바로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OECD) 	
	감사자료의 공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메뉴의 신설	조례 개정 혹은 조례 제정	<p>재정활동은 효과적인 내부 감시와 보호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IMF4.2)</p> <p>재정정보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IMF4.3)</p>	
	개별 사업별 직접적인 질의응답 메뉴: 사업별 항목에 댓글 기능을 통해서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 직접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공			
책임성		재무회계규정의 개정	<p>모든 보고서에 적절한 회계정책의 요약서,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와의 괴리를 공시한다.</p> <p>사용된 회계의 기초 등 회계정책의 요약서</p> <p>보고서에는 보고서 산출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의한 책임진술서를 포함하여</p>	책임진술서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검토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편성 내역의 공개: 기준년도별 중기 전망에 대한 근거 및 변화 등을 볼 수 있는 자료의 제공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보완	아한다.(OECD) 경제적 가정의 변화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OECD) 예산편성은 이미 수립된 일정표를 준수해야 하며, 잘 정의된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목적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IMF)	
개방성	편성사업별 구체사업계획서의 전면 공개: 기존의 사업명 공개방식에서 추가하여 세부사업계획서 문서를 원본으로 공개함		예산 및 기타 문서의 공개 (IBP)	
	사업별 추진단계의 공개: 기존의 자금지출 총액과 더불어 사업추진단계의 공개		재정정보는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MF 3.2)	

2) 이용자 관점별 개선 방향

시스템 이용자는 관리자, 이용자로 구분될 수 있다. 관리자는 도시군의 재정/예산 담당자들이고, 이용자는 도시군의 비 재정예산 담당자, 민간사업체 등의 재정 이해관계자, 예산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로 구분될 수 있다.

(1) 관리자의 관점

충청남도과 산하 시군의 재정/예산 담당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관리자에게는 편리성과 수월성이 요구된다. 관리자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 번 작성한 자료를 중복해서 작성하는 등 본인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업무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중복작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 입력 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의 수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이용자의 관점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자는 1) 도, 시군의 비 재정/예산 담당자, 2) 재정 이해관계자(민간사업체 등), 3) 시민사회(예산감시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산재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당사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실효성), 부서간 유관 업무가 교차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종합성)

민간사업체 등 재정 이해관계자들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업시기나 조건에 대해 예측가능해야 하고(적시성), 재정지출 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투명성)

시민사회의 예산감시 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가독성), 필요한 자료의 산출이 쉽게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용이성)

〈표 8〉 관점별 요구사항

관점별		요구사항
관리자		편리성: 중복작업의 최소화 수월성: 자료 입력의 단순함
이용자	타업무 공무원	실효성: 업무 추진에 도움 종합성: 타 부서 유관업무의 교차 확인
	재정이해관계자	적시성: 사업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 투명성: 재정지출과정이 분명함
	시민사회	가독성: 자료 이해가 쉬움 용이성: 필요한 자료의 산출이 가능함

2. 세부 개선 사항

다음은 개선 전략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근거해 도출한 세부 개선 사항이다.

1) 첫화면

현재 시스템의 첫 화면은 하위 메뉴로 이동하는 기능만할 뿐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첫화면에서는 매일 변화하는 재정정보 현황을 보여 주는 것이 역동적인 사이트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용어해설

재정 관련 용어는 전문가나 실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용어의 어려움은 재정 정보 습득과 활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 용어에 대해 마우스 커서가 가면 해당 설명이 팝업되는 '튜토리얼'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영업 병기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메뉴명과 내용설명에 영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4) 사업 추진 경과 공개

현재 세부사업별로 지출액과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지출액과 지출비율 공개를 넘어서 지출 흐름에 따라 사업추진경과를 사업설명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까지 지급된 용역 대가 지급 내역과 향후 지급할 계획을 공개한다면 현재 사업추진경과를 더욱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입찰 공고 정보와 연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계약정보를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현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입찰 공고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정보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세부사업정보에서는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계약정보시스템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연계는 충청남도 차원의 전선개발 범위를 넘어서 행정자치부 차원의 전산 개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양 시스템의 연계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6) 지출과정 연동

사업별 공고,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와 이후 지출 내역, 지출 예정 등의 지출 과정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체 등 재정이해관계자들이 지출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예산서, 결산서 HTML, XLS 다운로드

세입세출예산서, 결산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을 온라인 페이지에 친화적인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열람하고, 종합적 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XLS(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 세부사업설명서 전문 공개

사업별 세부 설명서 및 예산산출 명세서 전문을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9) 기존 감사결과 게재

감사지적사항 메뉴를 신설해 감사원, 자체감사, 의회감사 등 재정관련 감사 지적 사항과 이행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신규 및 종료 사업 목록

신규사업, 종료사업, 대규모 사업(100억 이상) 목록 및 연도별 집행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지출액/예산현액 비율 표시

집행 결과 화면에 지출액과 집행율을 함께 표기해 '액수'와 '집행률'을 포함하여 계량적 분

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각종 심사위원회 정보 공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융자심사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지원금심사위원회, 민간 위탁심사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13) 사업 단계별 정보 제공

사업이 입안, 심사, 의결, 평가되는 일련의 과정의 정보가 단계별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입안 단계에서는 사업별 설명서, 심사 단계에서는 투융자심사자료 등, 의결 단계에서는 의회에 서 이루어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평가 단계에서는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

14) 관련 정보/서비스와의 연계

예산낭비신고 메뉴, 중장기재정계획 등 기존에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표 9〉 세부 개선 사항

연번	항목	개편내용	해당 메뉴	비고
1	첫화면	첫 화면에 변화되는 정보를 노출 - 현재 예산 집행 현황 그래프	메인	
2	용어해설	재정 용어에 대한 해설 제공 - 용어에 마우스커서가 가면 해당 설명이 팝업	전메뉴	
3	영어병기	외국 이용자를 위해 예산 용어 영어명 병기 - 한글 용어와 영어 용어 병기	전메뉴	
4	사업추진경과 공개	지출 흐름에 따른 사업추진경과를 세부사업 설명에서 공개 - 용역대가 지급 내역 및 계획 공개	세부사업 설명	
5	입찰 공고 정보와 연계	재정정보공개와 입찰공고정보를 연계 - 재정정보 사업설명서와 입찰공고를 연계해 입찰 기본정보와 과업지시서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입찰이 끝난 경우에는 계약 결과와 연계	세부사업 설명	장기 과제

6	지출과정연동	지출원인행위 이후의 과정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과 연동	세부사업 설명	장기 과제
7	예산서, 결산서 HTML, XLS 다운로드	세입세출예산서, 결산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을 온라인 페이지에 친화적인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열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함	세입세출 예산서	
8	세부사업설명서 전문 공개	사업별 세부 설명서 및 예산산출 명세서 전문을 PDF로 공개	세부사업 설명	
9	기존 감사결과 게재	감사지적사항 메뉴 신설 감사원, 자체감사, 의회감사 등 재정관련 감사 지적 사항의 이행결과 게재	메뉴 신설	
10	신규 및 종료사업 목록	신규사업, 종료사업, 대규모 사업(100억 이상) 목록 및 연도별 집행 현황 정보 제공	메뉴신설	
11	지출액/예산현액 비율 표시	분류 메뉴에 ‘액수’와 ‘집행률’을 포함하여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지출액과 집행율을 함께 표기	전메뉴	
12	각종 심사위원회 정보 공개	투융자심사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지원금심사위원회,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공개	메뉴 신설	
13	사업 단계별 정보 제공	입안 :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 심사 : 투융자심사자료 의결 : 예산안 및 예산서 평가 : 결산서, 사업성과보고서	세부사업 설명서	장기 과제
14	관련 정보/서비스와의 연계	예산낭비신고 메뉴, 중장기재정계획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		

3. 개선 효과 - 국제기준 부합정도

1) 국제적 재정투명성 기준의 내용

(1) IMF 재정투명성 규약

재정투명성과 경제성과의 관계를 IMF의 '기준과 규약 준수 보고서(the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의 평가를 활용하여 계량 분석하였는데 재정투명성의 지표를 4개의 하위지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더 투명한 국가일수록 신용등급(credit ratings),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부패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즉 재정투명성이 높을수록 국제적인 신용등급과 재정낭비를 막는 재정규율, 그리고 부패 방지에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설정과 논의의 중심 지표로 언급되는 IMF의 규약은 1998년에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2000년 1월에 IMF에 우리나라 재정투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했고, 2001년 2월에 평가보고서³⁾가 공개된 바 있다. 이후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3) 당시에 지적된 재정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기획예산처, 2001.)

-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작성
 -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조세투명성 개선
 - 예산외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의 합리화
 -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pilot-projects) 확대
-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을 통해 이차보전이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자금 용자 및 대출 보증의 축소
- 재정정보 공개·확대에 관한 사항
 - 예산서 보완
 - 우발채무의 내역 및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하여 명시
 - 조세지출 내역 명시
 - 각종 정책금융, 정부보증을 통한 암묵적 보조 등 준재정 활동의 내역 명시
 - 예산년도 직전 2개년도의 재정정보 및 이후 2개년도 예산추계치 명시
 - 재정의 건전성유지(예 : 국민연금채무)에 대한 평가
 - 정부부채 및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표
 - 거시경제 및 재정전망에 사용되는 방법·가정 공개

2001년에 개정된 후 2007년에 재개정하였다. 2007년의 재정투명성 규약은 기본적인 4대 구조 하에 10개의 원칙, 45개의 세부 코드를 규정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기본 구조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공개된 예산 과정',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는 정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부문이 기타 공공부문 · 민간경제와 구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내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공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재정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공개된 법적 · 규제적 · 행정적 틀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독립적인 재정투명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공개된 예산 과정'에서는 예산 준비가 기수립된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잘 정의된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목적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예산 집행execution · 감시 monitoring · 보고reporting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예산규율의 강화가 목적이다.

셋째,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에 있어 3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데 먼저 국민은 정부의 과거 · 현재 ·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위기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다음으로 재정정보는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의 시기적절한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즉 실효적인 정보의 공개에 대한 원칙으로, 참여 보장을 통한 재정투명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과 연관된다. 특히 정보공개에의 수용자 입장을 강조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재정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데이터 질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재정 활동이 효과적인 내부 감시와 세이프 가드에 의해 함을 제시한다. 재정정보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장기적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재정 운용의 주체가 재정투명성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럴 경우 감시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되지만 관점의 다층화를 통해서 좀 더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을 통해서 재정정보의 실질적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IMF의 규약에 있어서, 각각의 원칙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이중 재정투명성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은 '공개된 예산 과정'과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IMF의 동 원칙에 대한 매뉴얼에서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활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정투명성의 핵심적인 특징이며, 재정활동과 정부 목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정책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방식의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재정정보의 시기적절하고 균일한 이용을 확실하게 하는 초석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IMF의 재정투명성 기준에 따른 평가는 회원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해당 규약의 재정투명성 부문 평가가 가장 최근의 평가이며, 2007년도에 IMF의 재정투명성 코드가 변경된 이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에서 언급된 4가지 영역과 세부 지표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 4가지 영역에서 20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표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표 10〉 MF 재정투명성 규약의 영역 및 세부지표

내용	
1.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확성	
1.1	정부부문은 여타 공공부문 및 민간경제와 구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내에서의 정책과 관리 역할은 명확하여야 하고,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2	재정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공개된 법적, 규제적, 행정적 틀이 있어야 한다.

2. 예산 과정의 공개	
2.1	예산편성은 이미 수립된 일정표를 준수해야 하며, 잘 정의된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목적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2.2	예산집행, 감시, 보고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정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3.1	국민은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위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2	재정정보는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3	재정정보의 시기 적절한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4.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	
4.1	재정자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 품질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4.2	재정활동은 효과적인 내부 감시와 보호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4.3	재정정보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예산처⁴⁾는 IMF의 재정투명성 코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규약의 항목으로 2가지 기본구조에 3가지 원칙, 5가지 기본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IMF 규약에 따르면, ‘공개된 예산 과정’의 항목 내에서 예산 현황에 관한 반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재정법」상 행정부의 예산 현황에 대한 반기 보고서 규정이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당해 연도 중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사항은 통합재정에 관한 월간 보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매뉴얼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에는 예산 집행budget implementation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comprehensive analysis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종합적인 분석에는 주요 세입, 세출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함께 연도말 추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결정과 환경적 요인들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거시경제안정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당해 연도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보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2010.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재정에 특화된 반기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의 항목 내에서 과거와 미래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 재정 성과에 대한 내용이 연도별 예산서the annual budget presentation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동시에 제출하여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 상황 추정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법정 예산안 서류에도 과거의 실적 자료 정보와 예산안 정보가 비교 가능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칠레의 경우를 보면, 예산연도 이전 4년간의 예산총계 에 관한 정보와 향후 3년간의 예산에 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 등 최대한 많은 총계 정보 이하의 세부정보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서는 장기 재정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화와 한정된 자연자원, 기후변화에 의한 잠재 효과 등과 관련한 재정변수 (fiscal variables)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현재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미 정부 예산서의 '분석적 전망Analytical Perspectives'를 살펴보면, 최대 75년 단위의 사회 보장 지출social security 등에 대한 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재정에 관한 장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 'EU의 장기 재정 안정성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the European Union'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세대 간 회계 등을 활용한 재정 상황에 대한 장기추계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장기재정전망 관련 규약 내용

내용	
2. 예산 과정의 공개	
2.2	예산집행, 감시, 보고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정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3.1	국민은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위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3	재정정보의 시기 적절한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2.2와 관련하여 예산 현황에 관한 반기보고서가 시기적절하게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최소한 분기 수준의 업데이트가 발간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취약하다고 지적되었다. 실제로 현행 '국가재정법' 상의 재정정보 공개가 형식적인 공개절차에 불과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측이나 그것을 통해서 문제시하는 국회 양측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드물다.

3.1과 관련하여 최소 2년 전의 회계기간의 산출물과 최소 향후 2년간의 주요예산총액에 대한 전망과 민감성 분석이 연간 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는 장기 재정에 관한 주기적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해당 항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재정투명성의 방향성이 국가 기구 간의 관계에서 보다는 '국민'이라는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소 5년간의 중기 재정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된 '열린 재정'을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또 다른 국민에 대한 재정정보 투명성이라는 지점에서, 3.3 재정 정보의 시기적절한 발간은 정부의 법적 의무이어야 한다 재정정보에 관한 사전 공표 일정이 발표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항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재정정보 공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재정정보공개 현황

공개 정보	공표 게시년도	게시빈도	공개방식
예산	1954년	매년 12초	열린 재정
기금(기금운용계획)	2007년	매년 12초	열린 재정
결산(국가결산 보고서)	1949년	매년 6월초	열린 재정
차입금(국가채무)	1997년	매년 4.20일경	열린 재정
국유재산 현재액 현황	2007년	매년 6월초	열린 재정
통합재정수지	2011년	매월	홈페이지 게재

국가채권 현황 및 변동내역	2002년	매년 4.20일경	열린 재정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년	매년 10월초	열린 재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08년	매년 9월	홈페이지 게재
조세지출예산서	2011년	매년 10월초	열린 재정
국가채무관리보고서	1949년	매년 6월초	열린 재정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	2014년	매월	열린 재정
기금자산운용현황	2010년	매년 7월말	열린 재정

*기획재정부가 국회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15. 8.)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공개되고는 있었으나 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는 올해 ‘열린 재정’ 사이트의 구축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 IBP 지표

IMF 재정투명성 규약과 함께 주요하게 참조하는 사항 중 하나는 IBP 지표로, IMF 규약이 정부간 규약의 성격이 크고 IMF가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IBP는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 IBP는 1997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서 정부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가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예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단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도 IMF와 사뭇 다르다.

IMF는 해당 정부의 요청에 따라 IMF의 전문가 그룹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IBP의 평가 주체는 해당 국가의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예산전문가가 대상이 된다. 조사 주기는 2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에 경실련에 의해 진행된 바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회원 기구가 없는 상태다. 현재 2012년까지 조사되어 있다.

IBP의 설문지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예서에 대한 접근성 문제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고 예산안 뿐만 아니라 부속서류도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된다. 두 번째는 정부 예산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으

로 총 66개의 세부질문이 할당되었다. 기본적 연차별 예산안의 구성과 관련된 형식적인 측면과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지만,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질적 측면, 즉 포괄성이라는 부분에도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

〈표 13〉 IBP 3개 분야 총 122개 질문

분 야	세부항목	질문수
	계	122
	소 계	-
Section 1 : 예산서의 접근성 (The Availability of Budget Document)	1. 답변서 작성에 활용한 회계연도 2. 주요 예산문서 인터넷 주소 링크 3. 정부예산안 관련 문서 공개 4. 예산 및 기타 보고서 공개	- - - -
	소 계	66
Section 2 : 정부 예산안 (The Executive's Budget Proposal)	1. 차년도 예산안과 차차년도 예산안 2. 전년도 예산안 3. 포괄성 4. 성과모니터링 5. 예산분석과 모니터링의 추가정보	17 17 13 8 11
	소 계	56
Section 3 : 예산편성과정 (The Budget Process)	1. 예산 구성 2. 국회의 예산 심사 3. 행정부의 예산 실행 4. 결산보고 및 감사	8 9 18 21

하지만 최근에는 질문의 항목이 125개로 변경되었고, 예산평가의 범주도 기존의 3가지 부분에서 <예산공개지표>와 <포괄적예산지표>로 구분되었고 각각 98개와 27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공개지수 내용에 있어 예산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 중 국민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Provides Significant Information to Citizens)로 분류되었고, 2012년 현재 73점⁵⁾을 보이고 있다.

2)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

충남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5) <http://survey.internationalbudget.org/#rankings>

내용		현	개선 내용	개선
1.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확성				
1.1	정부부문은 여타 공공부문 및 민간경제와 구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내에서의 정책과 관리 역할은 명확하여야 하고,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
1.2	재정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공개된 법적, 규제적, 행정적 틀이 있어야 한다.		도 제도 개선 (재무회계규정, 관련 조례개정)	√
2. 예산 과정의 공개				
2.1	예산편성은 이미 수립된 일정표를 준수해야 하며, 잘 정의된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목적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메뉴 신설	√
2.2	예산집행, 감시, 보고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시민 예산낭비신고 메뉴신설	√
3. 정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용가능성 보장				
3.1	국민은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정활동과 주요 재정위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
3.2	재정정보는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3.3	재정정보의 시기 적절한 대외 공표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		√
4. 재정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보증				
4.1	재정자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 품질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
4.2	재정활동은 효과적인 내부 감시와 보호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예산낭비신고메뉴 신설	√
4.3	재정정보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감사보고서 공개	√

분 야	세 부 항 목	현	개선내용	개선
예 산 문 서 의 접 근 성	1. 답변서 작성에 활용한 예산 문서	√		√
	2. 설문에 활용된 주요 예산 문서 : 제목 및 인터넷 링크	√	기 실시중인 도민여론조사 결과 공개	√
	3. 정부예산안 관련 문서의 공개 여부		보조사업 여부 명시	√
	4. 예산 및 기타 문서의 공개		사 업 계 획 서 공개	√
정 부 예 산 안	1. 내년도 예산안 및 그 이후의 예산안		·과년도 예산 정보	√
	2. 당해연도 예산 이전 연도 예산		·중기지방재 정계획 공개	√
	3. 포괄성	√		√
	4. 예산 진술과 성과 모니터링		성 과 보 고 서 공개	√
	5. 예산분석과 모니터링의 추가 정보		별도 제도 마련	
예 산 과 정	1. 예산안 편성	√		√
	2. 의회 예산심의	√		√
	3. 행정부 예산집행	√		√
	4. 결산보고 및 감사	√		√
	5. 감사원의 독립성과 성과		감사결과 공 개	√

부 문	세부 지표	현황			보완 사항	보완 후 현황		
		충족	보통	부족		충족	보통	부족
예산 과정/ 순환 주기	시민들의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		튜토리얼 기능 신설	✓		
재정 정보의 공개 및 전달	사전예산보고서가 적어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공표된다.	✓			충족	✓		
	월별보고서를 통해 예산집행의 진척상황을 보여준다.	✓			충족	✓		
	월별보고서는 매월말 4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			충족	✓		
	차입 활동은 월별보고서에 공시된다.	✓			충족	✓		
	연말보고서는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	법령개정사항(중장기 과제)			
	사전선거보고서는 선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거 바로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				
	장기보고서는 적어도 매 5년마다 수입/지출 프로그램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발표되어야 한다.	✓			충족	✓		
수법사례에 속하는 재정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			충족	✓			
중기보고서는 연도 중간 말 6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		도 조례 개정	✓			
재정 보고의 세부 내용	모든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예산	✓			충족	✓		
	예산은 각 수입과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충족	✓		
	지출은 총량 기준으로 표시된다.	✓			충족	✓		
재정 보고의	용도가 지정된 수입과 사용자 부담금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			충족	✓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세출은 행정단위 또는 기관, 경제적 구분과 기능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			충족	√		
	목표치를 포함하는 비재무성과 데이터는 지출프로그램을 위해 공표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서 및 수반 용역보고서 공개 기존 성과지표 체계 개선	√		
	우발부채의 총책은 예산과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한다.	√			충족	√		
	주요 형태별로 분류된 금융자산 : 투자금, 대여금 등	√			충족	√		
	부동산과 장비를 포함하는 비금융자산은 공시된다.	√			충족	√		
	비금융자산은 완전한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 하에서 인식된다.	√			충족	√		
	비금융자산의 가치평가와 감가상각은 적용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시된다.	√			충족	√		
세부 내용	표시통화별, 만기별, 이자율별, 만기선(수시) 상환가능성별 채무의 분류		√		채무의 발생주의 원칙에 근거한 정보공개 및 상환계획	√		
	비용자 연금의무와 자산은 예산과 재무보고서에 공시된다		√					
	비용자 연금의무의 계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보험통계법적 가정은 공시되어야 한다.			√	법령 개정사항			
	조세지출	√			충족	√		
	주요한 조세지출의 추정원가가 예산 보충정보로 공시된다.		√		보충정보의 내역 및 공개범위 설정(중장기 과제)			
	조세지출에 대한 토론이 예산 설명에 포함된다.			√	조세지출보고서공개	√		
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 시스템	모든 보고서에 적절한 회계정책의 요약서,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와의 괴리를 공시한다.			√	기존 재무보고서의 내용에 '부가자료'로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중장기 과제)			
	사용된 회계의 기초 등 회계정책의 요약서			√				

	내부감사를 포함하는 내부재정통제 시스템		√						
	보고서에는 보고서 산출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의한 책임진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연말보고서는 GAAP 기준 준수에 대해 최고감사기구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알수 없음							
	연말보고서는 최고감사기구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재정 예측과 전망	예측은 중기 관점(최소 2년)을 포함한다 전년도와 실제액 간의 조정	√			충족	√			
	중기보고서는 최신 수정 자료를 제공한다.	√			충족	√			
	중기보고서는 예산과 변화의 영향, 정부의사결정 또는 새로운 환경을 기초로 하는 경제적 가정을 공시한다.	√			충족	√			
	장기보고서는 인구학적 변화(10년~40년)의 예산상의 영향을 제시한다.	√			충족	√			
	주요 경제적 가정은 공시된다 : GDP성장률, 실업, 경상수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		중양정부 및 도의 경제전망 공개: 세입전망 및 세출전망에 대한 근거 제시	√		
	경제적 가정의 변화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기존의 단일 시나리오 추정방식을 복수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			

4. 활용방안

공개된 재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단계 더 향상된 재정정보공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선순환의 환류 과정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를 매개로 하는 '재정정보 경진대회' 실시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마을 살림살이 알기' 경진대회 실시
- 우수 학교 및 학생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

(2) 시민지출관 혹은 재정관 제도 시범 도입

- 음부즈만 제도를 확대해 시민 지출관과 재정관 제도를 도입해 재정 집행 과정에 시민 감사 체제 도입
- 시민지출관, 재정관 보고서를 발표해 재정 과정에 대한 시민 감사 체제 안착

(3) 현 제로-100 디자인단의 미션 재설정

- 도내 외 학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전문가, 전공 석·박사과정생 활용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공개방안 논의

(4) 재정정보공개를 통한 업무 효율 증진 사례 수집 및 공유

- 부서간, 광역 - 기초간, 광역 - 중앙정부간 융합 행정 사례 수집 및 확산
- 기초단체 정보공개 및 예산분석 사례 창출 및 수집

제5장 결론 : 정책제언

정보공개는 행정의 복잡화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속한다. 일차적으로 재정규율이라는 차원에서 공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기관의 긴장감을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행정의 대상으로만 접근되었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제공자 → 수혜자의 구도를 벗어나 민관 협치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새로운 정부'의 모델을 위한 정책도구의 의미도 강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는 공개하는 측과 공개받는 측의 관점에 따라 공개의 범위와 질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공급하는 입장에서 상당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거나 혹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병행되지 않아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반의 정보공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 역시 단기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사례에서 간과하고 있는 수용자의 동기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용자 측에서의 관점'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수용자 측에서의 관점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비전

얕고 좁은 정보		예산, 결산의 공개	넓지만 얕은 정보	
		사업별 편성현황 및 집행과정 공개		
예산	+정책사업 및 집행계획	+ 실시간 지출 정보의 공개	+조세지출 현황 및 토론	+장기재정계획과의 실시간 비교
깊지만 좁은 정보		사전계획 및 예산수립의 공개	깊고 넓은 정보	
		원가 등 재정요소별 공개		

즉 실제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수용의 당사자인 지역 시민사회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앞서 범위/깊이의 문제와 별도로 수용성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와 도민들이 효과적으로 충남의 재정현황에 대해 접근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은 의문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사례와 다르게 충남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횡단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정정보 공개 뿐만 아니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지방정부의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서재만(2010), 재정정보공개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윤영진(2015),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 투명성.

정창수(2014), 전국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 평가, 국회 홍종학 의원실.

홍종학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8),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비교.

리더트 이안(2007), OECD 국가 예산 체계의 법적 구조에 관한 국제비교. OECD.

충청남도(2014), 세출예산 지출내역 재정정보 공개 확산을 위한 회계담당공무원
미국연수보고서

충청남도(2015), 세입-세출예산 재정정보 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한 회계담당공무원 합동해외
연수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 누리집

서울시 클린재정 cleanplus.seoul.go.kr/

서울위키 <http://yesan.seoul.go.kr/be/main.do>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IMF <http://www.imf.org/external/np/fad/trans/>

IBP <http://survey.internationalbudget.org>

WEF <http://www.weforum.org/>

[부록]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재정 용어 정리

1. 용어 정리의 방법

실제로 재정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용이하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1) 현재 충남넷 상 재정정보공개사이트를 참조하여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들을 우선하여 작성하였다.(기존의 가나다 순 재정용어 정리는 실제 사용과정에서는 별로 효용이 없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 편람' 및 '지방재정학회 재정용어집' 등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정용어들을 참조하되, 이용자의 시각에서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개념이 빈번히 나오는 용어들을 1차 용어로 정리하고, 사용빈도가 낮을수록 2차, 3차라는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상의 튜터링(용어 안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 2차 자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 즉각적인 튜터링을 위해서 제공하는 순화된 용어 설명이며, 3차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로 별도 페이지화해서 심화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2. 재정정보공개용 재정용어 정리

1) 1차 재정용어 목록

- 재정: 국가나 지방정부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
- 세입: 1년 동안 충청남도의 금고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 세출: 1년 동안 충청남도의 금고를 통해 나가는 모든 지출
- 예산: 1년 동안 충청남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여 작성한 예정계획
- 예산현액: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액이 줄거나 늘어서 변경된 예산의 총액
- 지방세: 충청남도 등 지방정부가 징수의 주체인 세금
- 보통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 목적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수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 취득세: 보통세 중 하나로, 세금이 붙는 물건(보통은 건물이나 토지)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레저세: 보통세 중 하나로, 경륜, 경정, 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과세하는 세금
- 지방소비세: 보통세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만들어지는 세금
-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의 권리를 얻거나 바꾸거나 버릴 때 공문서에 등기 혹은 등록을 하는데 이 때 내는 세금

-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자원들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건물이나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다시 자원을 보호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일부로 조성되어 학교 시설개선이나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세
- 세외수입: 세금말고 조성되는 수입으로 조성되는 세입의 총액
- 경상적 세외수입: 임대수입,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이월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
- 부담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수한 공익사업을 위해 이 사업으로부터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대상에게 징수하는 비용
- 과징금: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위반자가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수입
- 과태료: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 성격의 수입
-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세로 볼 수 있는 지방세원의 한 종류
-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중, 지방정부의 평균적인 행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분배하는 교부세

-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는 고려되지 못하는 특별한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해 분배하는 교부세
- 보조금: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광역정부나 기초정부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 국고보조금: 국가 사무를 광역정부나 기초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 광특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줄임말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 보전수입: 써야되는 돈에 비해 들어오는 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매꾸기 위해 전년도에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채를 통해서 끌어온 재원수입
- 순세계잉여금: 예상했던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많을 때 이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원
- 이월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회계연도를 넘어 넘겨준 잔액
- 결산: 실제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집행결과를 확정하는 재정활동
- 회계년도: 세입과 세출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간의 범위로 통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의 기간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
- 특별회계: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조성한 특별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

- 관별조서: 세입 세출항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을 묶어놓는 예산 과목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분류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세입 세출서
- 목별조서: 세입 세출항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을 묶어놓는 예산 과목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좁은 범위의 분류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세입 세출서
- 사업별조서: 세입 세출항목 중 특히 세출예산에 대해 개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세입 세출서
- 예비비: 혹시 모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해놓은 비용 재원
- 이용: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서로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예산 행위
- 전용: 같은 과목에 속하는 단위 사업 간의 예산을 서로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예산 행위
- 이체: 사업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다만 부서나 직제, 담당이 바뀔에 따라 새롭게 재편성 하는 예산 행위
- 재무제표: 기업에서 경영성과나 재정상태를 보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자료로 이를 지방 정부에 맞게 고쳐 사용하는 보고서
- 추경예산: 국고보조금이 변경되거나 혹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다시 가감하여 확정된 예산
- 공기업: 공익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설립한 기업

- 재정공시: 지방정부의 재정사항을 법률에 의거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정 행위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년도로부터 5년간의 세입과 세출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중기계획으로 예측가능한 재정활동을 위해 작성하는 예산계획

- 참여예산제: 예산편성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사업을 결정하는 예산제도

2) 2차 재정용어 목록 : 재정공시보고서

- 재정자립도: 지방정부 자체적인 수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행정비용에 견주어 측정된 지표

- 자체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조성된 재원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합쳐진 재원으로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재원

- 재정자주도: 자체적인 수입이 아니더라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행정비용에 견주어 측정된 지표

- 자주재원: 자체세입에 지방교부세를 합친 재원으로 자체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원

- 통합재정수지: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재무활동을 합해서 내부간 거래나 부채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적자와 흑자를 표시한 지표

- 성인지예산: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

- 당초예산: 구의회 의결이 되지 않은 예산, 통상적으로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

- 총계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발생하는 내부거래액도 중복해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가장 일반적인 예산의 규모

- 순계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의 중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고려한 예산의 규모

- 자체수입: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합친 수입 총액

- 의존수입: 중앙정부가 보조금 등과 같이 이전해주는 수입 총액

- 지방채: 특별한 목적이나 긴급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령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내는 부채

- 경상지출: 행정부서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 즉, 경상비를 사용하는 지출 총액

- 사업수요: 행정부서를 운영하는 비용 외에 이런 저런 정책사업 등을 하기 위한 지출 총액

3) 3차 재정용어 목록: '지방자치단체 재정개요 편람' 용어집⁶⁾

(1) 가나다 순

가용재원(可用財源)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決算)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公有財產)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國稅)
금고(金庫)
기금(基金)
기본경비(基本經費)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목적세(目的稅)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普通稅)
부담금(負擔金)
부채(負債)
불용액(不用額)
비용(費用)
사고이월(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수익(收益)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입(歲入)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6) 이하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집](2015. 7.)의 부록으로 첨부된 자료임.

세출(歲出)
 수의계약(隨意契約)
 순계예산(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예비비(豫備費)
 예산(豫算,budget)
 예산과목(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자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一般會計)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잉여금(剩餘金)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自體收入)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보전금(財政補填金)
 재정분석(財政分析)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재정진단(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세(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채권(債權)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총계예산(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출연금(出捐金)
 출자금(出資金)
 최저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융자사업 심사(投融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특별회계(特別會計)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會計)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2) 용어해설

▪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정적, 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

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이는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 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 도비 집행잔액)

- 비용(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 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수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용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 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 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유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 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 도비보조금(市, 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 도는 시, 군, 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 군, 구를 지도, 지원하는 기능상 시, 군, 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 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군, 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 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 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축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 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 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 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수정예산: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추가경정예산: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 군, 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 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 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

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회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 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보전금(財政補填金)

시, 군, 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 군, 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 군, 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 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 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으므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 용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세와 시, 군, 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 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 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 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times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익년도 2월말까지(15회계연도부터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를 출납 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 용자사업 심사(投, 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 용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 용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 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과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등 유용한 재무 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 ~ 익년 2월말 : 터키

4월 ~ 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 ~ 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 ~ 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 집 필 자 ■

연구 수행 기관 · 나라살림연구소

연 구 책 임 ·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겸임교수

공 동 연 구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전략연구 2015-32 · 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글쓴이 · 정창수, 김상철, 이승주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12월 31일 / 발행 · 2015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24(기획조정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31-5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